

마 케 팅 규 정

제정 2022. 7.28.

제1조(설치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제14호에 따라 협회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마케팅자산의 활용 및 보호 등 협회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케팅자산”이란 다음 각 목의 대한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유무형 자산을 말한다.
 - 가. 지식재산권: 협회 또는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를 지칭 또는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회가 정한 것
 - 나. 대회: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국내·외 경기대회
 - 다. 행사: 협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각종 회견, 인터뷰, 오픈대회 관련 행사 등
 - 라. 협회가 보유하거나 사용 권한을 갖는 규정 또는 시설
2. “상업권자”란 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협회에 후원금, 방송권료 등 대가를 내고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으로 마케팅자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후원권자, 상품화권자, 방송권자 등으로 구분된다.
3. “마케팅 대행”이란, 협회가 유관 단체 또는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자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 또는 지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관 단체”란, Asia-Pacific Golf Confederation(APGC), International Golf Federation(IGF), R&A, USGA(United States Golf Association)와 산하단체 및 시도골프협회 등 골프 관련 국내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마케팅 사업)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있다.

1. 후원권에 관한 사업
 - 가. 후원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조정
 - 나. 후원권자의 유치와 계약
 - 다. 후원권자의 후원 권리 이행, 지원 및 관리
2. 상품화권에 관한 사업

- 가. 상품화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조정
- 나. 상품화권자의 유치와 계약
- 다. 상품화권자의 상품화권리 이행, 지원 및 관리
- 3. 방송권에 관한 사업
 - 가. 방송권자의 상업적 권리 범위에 대한 결정·조정
 - 나. 방송권자의 유치와 계약
- 4. 협회가 보유하거나 사용 권한이 있는 규정 또는 행사 등에 관한 사업
 - 가. 협회가 보유하고 사용 권한이 있는 골프 규칙 및 핸디캡 시스템 사업 일체
 - 나. 협회 주최(주관)대회 또는 행사의 입장권 판매 또는 위탁판매
 - 다. 협회가 보유하거나 사용 권한이 있는 시설을 활용한 마케팅
 - 라. 골프장 이벤트 및 관련 행사 등 개최·운영
- 5. 마케팅자산과 관련된 영상, 사진 등의 제조와 판매 사업
- 6. 유관 단체와의 마케팅 관련 사업
 - 가. 유관 단체와의 공동마케팅 계약 등
 - 나. 유관 단체와의 공동상업권자 모집 등
- 7. 마케팅 대행 사업
 - 가. 유관 단체 마케팅 대행 또는 자문
 - 나. 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마케팅 대행 또는 지원
- 8. 마케팅자산의 등록,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
- 9.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회는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케팅 전문회사를 대행사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마케팅 수익 등의 사용) 마케팅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협회의 자체 수입으로 한다.

제5조(후원권자) 후원권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협회에 제공하고, 마케팅자산을 계약으로 정해진 범위와 방식으로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상품화권자) 상품화권자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협회에 제공하고, 마케팅자산을 활용하여 계약으로 정해진 품목, 범위, 방식 등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제공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제7조(방송권자) ① 방송권자는 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마케팅자산을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방송, 전송, 배포 및 기타의 방법으로 유통할 수 있다.

② 방송권자의 방송권 대상은 협회 주최(주관)대회 또는 행사 등이 있다.

③ 방송권자는 방송권 이용 시 협회의 후원권자 또는 상품화권자의 광고물과 상품 등이 노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 ① 협회의 상업권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업권자 선정의 목적·계약 규모 등 마케팅 업무의 특성과 협회 계약 규정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상업권자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1. 후원권자는 올림픽의 권리를 포함할 경우 하계올림픽 기간을 기준으로 매 4년마다 선정하며,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 종료 시점은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연도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협회와 후원권자의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상품화권자는 하계올림픽 기간을 기준으로 매 4년마다 선정하며,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 종료 시점은 하계올림픽이 개최되는 연도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협회와 상품화권자의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방송권자는 협회 주최 주관 대회 또는 행사 등의 일정 및 기간에 따라 계약시기 및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체결은 기존 상업권자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상업권자가 기존 계약에 따라 우선협상권을 보유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권자 선정 및 계약체결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상업권자의 권리보호) ① 협회는 신의성실로 계약이 정하고 있는 상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② 협회는 상업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상업권자의 책무) ① 상업권자는 협회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상업권자는 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권리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업권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권리를 행사하거나, 협회와 마케팅자산의 품위나 명성, 이미지에 해를 입히거나 손상을 주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한다.

제11조(대회·행사 참가자 등 관련 협회 권리) ① 대회·행사 참가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권리는 협회에 귀속된다.

1. 대회 또는 행사의 공식 복장을 착용한 초상, 성명, 이미지 등

2. 대회 또는 행사 참가(경기, 연습, 인터뷰 등 포함) 등에서 얻어진 참가자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

② 대회 또는 행사에서 입장권이나 출입증으로 경기장 또는 행사장 안에 들어온 관중 및 기타 관계자의 초상에 관한 권리는 대회 또는 행사의 규정, 입장권 약관 등에 따라 협회가 보유하거나 행사한다.

제12조(대회·행사 참가자 및 상업권자 등의 준수사항) ① 대회·행사 참가자는 대회 또는 행사 참가 시 협회의 공식 복장과 용품을 착용한다. 협회의 공식 복장과 용품을 착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협회의 승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상업권자는 이 규정 제12조제1항과 관련된 대회·행사 참가자의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 대회 행사 참가자 또는 상업권자가 아닌 자가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대회 또는 행사 기간에 국내에서 이 규정 제12조제1항과 관련된 초상, 성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R&A와 USGA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대회·행사 참가자 및 상업권자 등이 본 조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제반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공동마케팅) ① 협회와 유관 단체는 각 당사자의 마케팅자산을 활용하여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다.

② 공동마케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협회와 유관단체 간 체결되는 계약에 따른

다.

제14조(마케팅 대행 등) ① 협회는 유관단체 및 협회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의 마케팅을 대행 또는 지원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마케팅 대행 또는 지원의 수수료 및 세부 내용은 협회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다.

부 칙 <2022. 7.28.>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